

2026 주택관리사 기본서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정오사항_2 (초판기준)

페이지	503p ~ 504p
수정 전	<p>(6)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</p> <p>①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(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,500kW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)</p> <p>㉠ 용량 1천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</p> <p>㉡ 용량 300kW 미만의 발전설비(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·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). 다만,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~.</p> <p>㉢ 용량 1천kW~.</p> <p>② 개인대행자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(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,550kW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)</p> <p>㉠ 용량 5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</p> <p>㉡ 용량 150kW 미만의~.</p> <p>㉢ 용량 250kW(원격감시·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) 미만의~.</p>
수정 후 [법령개정]	<p>(6)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</p> <p>①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(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,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)</p> <p>㉠ 전기수용설비: 용량 1천 킬로와트 미만인 것</p> <p>㉡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(이하 “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”라 한다) 중 태양광발전설비: 용량 1천 킬로와트(원격감시·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 킬로와트) 미만인 것</p> <p>㉢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(원격감시·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):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</p> <p>㉣ 그 밖의 발전설비(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·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): 용량 300킬로와트(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) 미만인 것</p> <p>② 개인대행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(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)</p> <p>㉠ 전기수용설비: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</p> <p>㉡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: 용량 250킬로와트(원격감시·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) 미만인 것</p> <p>㉢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(원격감시·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):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인 것</p> <p>㉣ 그 밖의 발전설비(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·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): 용량 150킬로와트(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) 미만인 것</p>
페이지	504p ~ 508p
수정 전	<p>(8) 중대한 사고의 통보·조사</p> <p>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㉠ 안전공사</p> <p>㉡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</p> <p>㉢ 그 밖에 ① ㉠의 ㉡의 ㉡, ㉣ 또는 ㉣와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화재사고</p> <p>(9) 자가용 전기설비의 점검 등</p> <p>①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</p> <p>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㉡ ㉠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㉢ ㉡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(低壓)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(使用前檢査)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·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·파손되거나 전사·사변 등 비상사</p>

	<p>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㉠ 및 ㉡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사용 전 검사</p> <p>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도지사는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 <p>㉢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㉡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,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,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정기검사</p> <p>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3년마다 2월 전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(10)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등</p> <p>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~.</p> <p>(11)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</p> <p>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(이하 “안전공사”라 한다)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
<p>수정 후 [법령개정]</p>	<p>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수정 /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수정</p>